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사업안내서

1. 사업개요

-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 (지원기간) 협약일 ~ 2024.11.30.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금으로 구성되며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2.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 관리지침 제10조(신청자격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text{자본잠식률(\%)} = \frac{[(\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금}] \times 100}{}$
--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과제에 한함)

3. 선정 및 평가 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류 접수→사전검토→서면평가→현장확인→선정평가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정책부합성,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평가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발표평가, 종합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 신청서류 접수 : 사업안내서 [붙임4], 제5장에 기재된 필수서류 누락 시 미제출 처리
- 사전검토 :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1.5배수 범위 내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실시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임직원 1인 배석 가능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1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부합성, 달성도, 범위 다양성 여부)	40점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25점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15점
	▪ 효과성(환경·사회적 기대효과, 온실가스저감 효과)	20점
선정평가 (2단계)	▪ 사업계획(사업계획 구체성, 실효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	30점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40점
	▪ 시설 유지관리(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안전성)	20점
	▪ 기대효과(확산성)	10점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감점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 0.3) + (선정평가점수 × 0.7)

- 가·감점사항 : 최대 가점 8점, 감점 5점
 - ※ 세부사항은 [붙임2. 다]의 ‘가점 기준’ 및 [붙임2. 라]의 ‘감점 기준’ 참조

4.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은 협약서를 작성,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
 - ※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하여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료 기업 자부담)
 - ※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5. 진도관리

- 전담기관은 지원기업 진도관리(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계속 여부 결정
 - ※ 진도관리 결과 “계속” 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6. 결과보고 및 평가

- 결과보고 : 협약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결과평가 : 전담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 결과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 로 분류
 - ※ 결과평가 결과 “실패” 판정된 지원기업 및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계상·관리·사용) <붙임3>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 (정산) 검증기관*(회계법인)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 정부지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지원기업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8. 성과활용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효과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 지원기업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의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시설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지침 미숙지 및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10. 문의처

- (전담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 032-590-4812, 4816
- (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 기업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
국고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11. 참고사항

- (QnA)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 링크: <https://www.keco.or.kr/web/lay1/S1T265C267/contents.do>
- (사업계획서 샘플) 단순 참고용 샘플보고서
- 링크: <https://www.keco.or.kr/web/lay1/S1T265C1164/contents.do>

[붙임1] 사업별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지원분야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 (필수)	연·원료 전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 코크스, 납사 등 대체재 생산 또는 적용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ESS 포함) 등 ※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한하며, 사업비 중 유형자산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열분해에 의한 연료화 설비 등
	에너지 회수·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활용 열, 폐열 폐압, 차압 또는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폐열보일러, 폐가스 공급시설, 스팀회수시설, 열교환기,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인버터적용 시설, 콤프레샤, 펌프, 보일러, 냉동기 교반기, 변압기 등
	탄소포집·저장·활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포집공정 설비 - 흡수탑, 건식·습식 유동층, 분리막 설비 등 ○ 탄소 저장을 위한 설비 등 ○ 탄소 활용을 위한 설비 등
	건축물에너지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 사무실 내 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지붕 및 벽면의 단열, 단열창호, LED 조명 등 ○ 기타 건물의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자연채광, 지붕 및 벽면의 녹화 등
	오염방지시설 에너지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방지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인버터 장착 블로워, 고효율 스크러버 등
ICT (필수)	사업성과모니터링 ·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저감 등 개선설비 전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시설 -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관련 계측기, 제어장비, 센서 등

대기오염 저감	대기오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집진장치, 흡착시설, 먼지제거장치 등
수질오염 저감	수질오염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폐수를 정화·재이용하는 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재순환시설, 집수장치, 포기장치, 여과장비, 유수분리기, 펌프류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유해물질 포함)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약품자동조절장치 등
	비점오염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저류지, 나무화분 여과장치 등 ○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
폐기물 배출저감	폐기물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는 시설 - 탈수시설, 불량제품 생산절감시설 등
	유해원료 사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성 원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원료 투입량 조절장치, 저장탱크 등
자원순환	빗물의 재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우수저장조, 여과시설, 펌프시설 등
	폐기물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선별기, 파쇄기, 정제시설,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 ○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시설 - 재활용벽돌, 재활용석고, 재활용유리 등
환경보건	악취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 포집장치, 배기장치, 세정장치, 흡착장치 등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 실내 환기 또는 공조설비 개선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 등
	소음·진동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 - 소음기, 방음벽, 흡음·차음 판넬 등
	환경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내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 - 넘어짐·추락 방지설비, 끼임방지 덮개, 가스감지기, 긴급샤워시설 등 <p>※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p>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 ※ 녹지조성 및 수목 식재 등 공정 중 발생 폐기물 저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설비 제외 ※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지원분야는 필수 2개 분야(온실가스 저감, ICT)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시설 1개당 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 ※ 지원범위는 설치비용에 한하며,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제시된 예시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붙임2] 서면평가 및 선정평가 기준

가.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 제시된 과제에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 구축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기업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
	사업목적 달성도(10)	-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 -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의 재무현황(10)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를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와 설비별 사업예산의 편중여부를 평가한다. -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비편성 타당성(5)	- 개선설비별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효과성 (20)	환경·사회적 기대효과(10)	-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온실가스저감 효과(10)	-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나. 선정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계획 (30)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세부 사양 및 설치장소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실효성(10)	- 제시된 사업계획이 국내 산업계에 효과를 거둘수 있는 내용인지를 평가한다.
	사업비 산정 적정성(10)	-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15)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시스템, 설비 관리 등의 수행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의 이해도(10)	- 신청기업이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과제의 세부추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을지를 평가한다.
	사업의 효과성(15)	- 과제의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설의 유지관리 (20)	유지관리 편의성(10)	- 설비의 개선 후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설의 안전성(10)	-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대효과 (10)	사업 확산성(10)	- 타 공장예의 보급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한다.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 0.3) + (선정평가점수 × 0.7)

다. 가점기준

항 목	가점	비고
①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증빙 제출
②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	1.5	증빙 제출
③ 신청기업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2	증빙 제출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기술을 적용한 기업(최근 5년 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 제출
⑤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한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및 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 제출
⑥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지자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	1	증빙 제출
⑦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1	증빙 제출
⑧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 제출
⑨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內)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1	증빙 제출
⑩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	1	증빙 제출

※ 가점은 항목별 중복은 가능하나, 항목 내에서 중복은 불가능

※ 가점은 중소기업 가점(①항) 3점과 나머지 항목(②항~⑩항)의 합계(최대 5점)로 총 8점까지만 부여

라. 감점기준

항 목	감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구축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5점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등의 구입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구입한 장비의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에 포함
건설비	설계비	1.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공사 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1.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함 2. 교통·환경영향평가, 설계보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제외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1. 시설제작 경비 2. 자재 및 시공에 소요되는 세부내역 포함
운영비	일반 용역비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1.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 2. 설계비,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 3. 정산관련 검증용역비 (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
	일반수 용비	1. 시험분석 수수료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공인인증시험기관 및 전문기관 분석 수수료 ※ 분석 시약 및 키트, 분석기기 산정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보험료 등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	--

20 . .

사업계획 요약

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실가스 저감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CT <input type="checkbox"/> 환경보건 <input type="checkbox"/> 대기오염 저감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수질오염 저감 (상기 8개 분야 중 의무 <input type="checkbox"/> 폐기물배출 저감 선택 2개 분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 필수)
신청기업		과제명	※ 사업목표와 달성방법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금액 (천 원)			
비율 (%)	100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목표

분야	개선설비	기존 발생량 (a)	사업후 발생량 (b)	변화량 (c=a-b)	개선비율
					%
					%

3. 세부 사업 내용

-
-

4. 세부 추진 일정(안)

-
-

5. 예상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제1장

신청기업 일반현황

1. 신청기업

1.1.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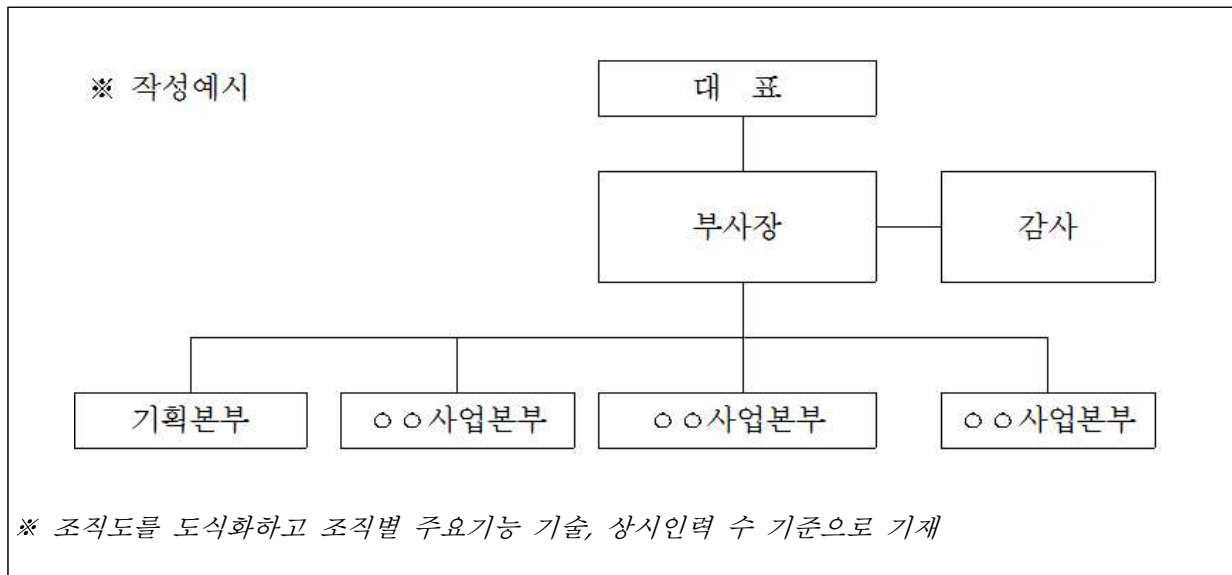
기업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년	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1.3. 기구현황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

*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해당 지원사업자(신청기업)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 등 기술

2. 사업의 목표

분야	구축설비		예상효과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온실가스 저감				(%)
ICT				(%)
대기오염 저감				(%)
수질오염 저감				(%)
폐기물배출 저감				(%)
환경보전				(%)
자원순환				(%)
소음				(%)
약취				(%)
기타				

* 각 시설 분야별 목표 항목의 저감량 및 저감율을 산출하여 작성

3. 사업내용

3.1. 신청과제(시설) 개요

3.1.1. 과제(시설)명:

3.1.2 과제(시설)개요

-

-

* 신청과제(시설)의 정식명칭을 기재하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시설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3.1.3. 신청과제(시설) 필요성

○ 본 사업 목적과 설치 시설과의 연관성

-
-

** 신청과제(시설)가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자립화, 스마트 운영 관리 등에 기여하는 부분을 해당 시설의 우수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1.4. 과제(시설)의 우수성

-
-

** 신청과제(시설)의 산업적 중요성 또는 우수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세부추진일정

No.	사업추진내용	진도율(개월)					
		1	2	3	4	5	6
1							
2							
3							
4							
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필요 시 행 추가)

5. 설치현장 설명사진

No.	지원분야	설치시설	개선내용	설치현장
1				(사진)
				현장위치 명
2				(사진)
				현장위치 명
3				(사진)
				현장위치 명
4				(사진)
				현장위치 명

6. 사업수행참여자 및 업무분장

성명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7.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반납 및 환수완료 여부

8. 부정수급 방지대책

제3장

예상 효과

1. 과제(시설명):

2. 예상 효과

구 분	개선설비	기존 발생량 (a)	사업후 발생량 (b)	변화량 (c=a-b)	개선율 (d=c/a)	B/C	
						연간B/C	총B/C
온실가스		tCO ₂ eq./년 (kWh/년)	tCO ₂ eq./년 (kWh/년)	tCO ₂ eq./년 (kWh/년)	%		
		tCO ₂ eq./년 (kWh/년)	tCO ₂ eq./년 (kWh/년)	tCO ₂ eq./년 (kWh/년)	%		
	합계	tCO ₂ eq./년 (kWh/년)	tCO ₂ eq./년 (kWh/년)	tCO ₂ eq./년 (kWh/년)	%		
스마트계측 (ICT)		천원/년	천원/년	천원/년	%		
대기		ppm	ppm	ppm	%		
수질		ton/년	ton/년	ton/년	%		
폐기물배출		ton/년	ton/년	ton/년	%		
자원순환		ton/년	ton/년	ton/년	%		
소음		dB	dB	dB	%		
악취		배	배	배	%		
고용창출		명	명	명	%		
경제적효과		천원/년	천원/년	천원/년	%		

- * 예상효과는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며, 사업 전 배출량 및 소비량 등 산정에 적용한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첨부
- * 단일 설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분야에 중복하여 효과를 작성할 수 없음
- *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고효율 기기 등 전력 생산과 저감량으로 표기할 수 있는 설비는 전력량과 온실가스 저감량을 함께 작성
- * 스마트계측 분야의 발생량 및 달성목표는 경제적 효과(○○○천원)로 작성 가능
- * 분야별로 다수의 설비를 개선할 경우 개별 설비의 개선효과와 분야별 합계를 모두 작성
- * 수질분야 발생량(ton/년) = 농도(mg/l) × 유량(Q)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
- * 개선비율은 “목표저감량 ÷ 기존발생량 × 100”으로 작성
- * 각 분야별 B/C 값은 첨부(경제적 성과 산정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총 B/C는 연간 B/C에 내구연한을 곱한 값으로 산출
ex) 저감시설 설치로 연간 B/C = B(연간 절감 비용) / C(시설설치비용)을 산출하고, 시설 내구연한(10년)을 곱하여 총 B/C 값 산출

3. 산출근거

- ※ 효과 산정 시, 신청시설을 신청기업에 설치하였을 때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자원순환성과, 에너지 절감, 비용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산정
- 예시) 신청시설 : A 에너지회수시설
 - 사업 전 : 신청기업에서 A 에너지회수시설 도입 전 기존 사용 따른 사용량 및 에너지비용
 - 사업 후 : 신청기업에서 A 에너지회수시설 도입 이후 사용량 및 에너지비용 (예상치)
 - 예상 감축량 : 사업 전 에너지비용 - 사업 후 에너지비용
- ※ 산출근거에 부속되는 증빙자료는 제3장의 본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첨으로 제출 불가
- ※ 산출근거 계산식 결과값이 제3장 예상효과 표 내 설비명, 사업 전 발생량(기존 발생량), 사업 후 발생량 값 일치하도록 기재

4.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첨부】

경제적 성과 산정표(예시)

부문	항목	산식
에너지	○생산장비 등 시설 교체, 보수 등을 통한 효율 개선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단가 · 생산증가량 × 제품단가
	○고효율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 개선된 가동횟수 × 횟수별 에너지 사용량
	○생산설비 운전 조건 재설정을 통한 효율 개선	· 에너지 절감량 × 에너지 단가(전력)
	○시설 운영방식 교체를 통한 효율 개선	· 절감 가동시간 × 시간당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에너지 사용요금 절감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에너지 단가(전력)
	○건축물 개선을 통한 냉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 (개선 전 - 개선 후 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단가(전력)
	○보일러 등에서의 고온 응축수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 (개선 전 - 개선 후 응축수 재사용량) × 에너지 단가(전력)
	○폐열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 (개선 전 - 개선 후 폐열 사용량) × 에너지 단가(전력)
	○피크전력 회피에 따른 가동에너지 저감에 따른 비용 절감	· (개선 전 - 개선 후 피크 전력량) × 에너지 단가(전력)
	○친환경 비닐, 플라스틱 소재 사용으로 폐플라스틱 조각 폐기물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 (개선 전 - 개선 후 친환경재료 량) × 온실가스 배출계수
	○냉동기 친환경 냉매 사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 (개선 전 - 개선 후 친환경냉매 량) × 온실가스 배출계수
대기	○대기 중 비산되는 원재료 포집 효율 개선	· 원재료 포집 개선량 × 원재료 단가
	○집진기 필터재질 교체를 통한 필터 구매비용 절감	· 집진기 필터 구매 절감 비용
	○불꽃감지 센서 장착의 덕트 적용으로 화재 예방	· 화재 방지에 따른 손실예방 금액
	○집진기 사전 유증기 덕트로 집진기 기능 수명 연장	· 집진기 청소 등 비용 절감

수질	○용수 재이용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물 사용량 저감	· 물 절감량 × 용수 단가
	○용수 포집 시설(빗물재용시설 등) 설치 등을 통한 용수 재이용	· 용수 재이용량 × 용수 단가
	○장비 용수 재활용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폐수 발생량 저감	· 용수 재활용량 × 용수 단가 · 위탁폐수처리량 × 위탁폐수 단가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시설 도입을 통한 자원순환 효율 증대	· 폐기물 재활용량 × 원자재 단가
	○장비 효율 개선을 통한 제품 불량률 개선	· (개선 전 불량률 - 개선 후 불량률) × 제품 단가
화학물질	○신규장비 도입, 장비 개선 등을 통한 화학물질 사용량 절감	· 화학물질 절감량 × 화학물질 단가 · 화학물질 폐기 처리량 × 폐기 단가
	○화학물질 누액 감지 및 조정재 잔량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 사전 차단	· 화학물질 방출 예방에 따른 비용 절감
작업효율 및 노동력 절감	○작업효율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절감	· 노동 절감시간 × 인건비

※대상 항목과 산식은 협약시 전담기관-지원기업 간 결정

제4장 사업비 사용계획 등

1. 총괄표

(단위 : 천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 (B)
100%	%	%

※ (A)+(B)=100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장비명)		
		(장비명)		
		계		
	소 계			
건설비	설계비	(장비명)		
		(장비명)		
		계		
	시설비	(장비명)		
		(장비명)		
		계		
소 계				
운영비	일반용역비	(구축용역명)		
		컨설팅비용		
		계		
	일반수용비	(시험분석명)		
		(시험분석명)		
		계		
소 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장비·재료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제5장

별첨서류

구분	순번	첨부서류			수량 (부)	체크사항		비고
						제출	비제출	
공단 양식 작성 서류	1	필수	[별지1] 사업 신청서 작성양식		1			
	2	필수	사업계획서		1			
	3	필수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4	필수	[별첨2]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원본	1			
	5	필수	[별첨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1			
	6	필수	[별첨4]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	원본	1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
구비 서류	7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8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9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개인사업자일 경 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			
	11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			
	12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			
	13	필수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조업 증빙 서류		1			
	14	해당 시	가점 현황 증빙 사본 (가점표 00쪽 확인)	사본	1			
	15	필수	시설의 주요구성 자료(개략도 등)		1			※레이아웃, 공정 도, 개략도 등 모 든 설비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16	필수	시설의 사양과약 자료		1			
17	필수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1			※유형자산 및 건 설비는 건당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환경전문공사, ICT설비 및 재생 에너지발전설비 는 각각 시공관 련면허(환경전문 공사업등록증, 정 보통신공사업등 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를 보유한 자가 발급한 내 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업등록증첨부 ※본견적서 1개,비 교견적서 2개 (장 비·재료비 건당 1 천만원 이상인 경 우) 제출필요
18	해당 시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 (최근 5년) 리스트		1			※사업명, 주관부 처, 사업비, 사업 기간, 성공여부, 수행책임자, 과제 주요내용 포함
19	필수	환경법적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증빙서류		1			※최근 6개월 이 내 지도점검 결 과 또는 공인기 관 시험성적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 사업계획서 표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부터 1페이지 시작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5. 서식 변경 및 과년도 양식 사용 금지

[별첨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업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input type="checkbox"/>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small>※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small>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 · 폐업 중인 경우				
• 본 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규정 위반업체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 · 영업 · 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20 년 월 일				
A기업 대표 000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기업 제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0000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계약기간 :

○ 기 업 명: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2.8.10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